

#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

## <목 차>

1.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에 운동경기부 포함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문화체육관광부	작성자	이름	이준협
	담당부서 (과)	체육진흥과		직급	서기관
	국장	이정우		연락처	044-203-3130
	과장	표광종		이메일	jun110@korea.kr

체육국장

이정우 (서명)



## 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 등		
	2.규제조문	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		
	3.위임법령	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4항		
	4.유형	개정	5.입법예고	
	6.검증단계			
	규제의 필요성	7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0.12.8.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(법률 제17580호, 2021.6.9. 시행)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하여금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</li> <li>○ 다만,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재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자체, 공공기관(국민체육진흥공단 등), 실업팀 등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3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(동호인 제외) 총 25,057명의 약 4%에 해당</li> </ul> </li> <li>○ 그러나 2023년 스포츠 인권·비리 실태조사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타 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*, 법령 개정취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침해 예방인 점 등을 고려할 때,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실태조사 결과, 프로 및 실업팀 선수의 인권침해·비리 경험 및 목격률은 14.3%로 초등학생(5.9%), 중고등학생(5.2%) 및 대학생(12.5%)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</li> </ul> </li> <li>○ 이에 따라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“운동경기부”를 재교육 대상 단체로 포함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을 시행하고, 체육계 지도자 전반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</li> </ul>	
8.규제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단체들의 체육지도자들은 매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함</li> </ul>		
9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피규제집단 :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(1,086명, '23.12월 기준)</li> <li>○ 이해관계자 : 전 체육인(45만명, '23년 기준)</li> </ul>		
10.규제목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를 재교육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체육지도자 재교육 운영</li> <li>○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보편적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을 신장시켜 체육계 인권침해·비리 사건을 예방 및 근절</li> </ul>		

		비용		편익	순비용	
규제의 적정성	11.비용편익분석 (단위:백만원)	피규제자	재교육 무료		-	-
		피규제자 이외				
		정성분석	재교육 위탁기관 행정부담 증가	체육지도자 윤리의식 제고	없음	
		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동경기부 지도자를 재교육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재교육 위탁기관(스포츠윤리센터, '24.5월 기준)의 대상자 수집 및 교육제공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재교육 기 시행 및 체육인 등록 시스템 등을 이용한 대상자 취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</li> <li>○ 이에 반해 현재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(동호인 제외) 총 25,057명의 약 4%에 해당하며 법령의 개정이유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,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인권침해·비리 사건 예방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</li> </ul>			
12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	경쟁영향평가		
	해당없음	해당없음		해당없음		
기타	13.일몰설정 여부	미설정				
	14.원칙허용·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	해당 없음				
	15.비용관리제 (단위:백만원)	적용여부	비용	편익	연간균등순비용	
미적용		0	0	0		

**<조문 대비표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<u>체육단체 및 학교</u>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.</p> <p>1. 대한체육회, 시·도체육회 및 시·군·구체육회(이하 “지방체육회”라 한다), 대한장애인체육회, 시·도장애인체육회 및 시·군·구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지방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</p> <p>2. <u>경기단체</u></p> <p>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p> <p>4.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2조의2(체육지도자의 재교육)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체육단체 및 학교, <u>운동경기부</u>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</u></p>

#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매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함
- 다만,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는 재교육을 수강해야 하는 대상으로 운동경기부는 제외되어 있음

관련조항	관련 단체	체육지도자 유형
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	- 대한(장애인)체육회 및 지방(장애인)체육회	- 대한(장애인) 및 지방(장애인)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
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	- 경기단체	- 종목단체별 국가대표 지도자 - 프로스포츠단체 지도자
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	- 학교	- 학교운동부지도자 - 스포츠클럽 강사
현행 제외	- 운동경기부	-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(지자체, 공공기관, 실업팀 등 운동부)

\* 2023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(동호인 제외) 총 23,603명의 약 5%에 해당

- 「2023년 스포츠 인권·비리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다른 체육단체보다 높게 나타남
- 특히 실업팀 선수의 인권침해·비리 목격 및 경험 비율이 타유형의 선수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

('23년 스포츠 인권·비리 실태조사)	인권침해·비리를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음				
	전체	초등학생	중고등학생	대학생	프로실업
응답비율	7.8%	5.9%	5.2%	12.5%	14.3%
응답자 수	2,352명	401명	746명	357명	626명

- “운동경기부”를 재교육 대상자 단체로 포함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취지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 ① 대안의 비교

○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운동경기부를 재교육 의무 대상에 포함
	내용	현행 재교육 대상자에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를 포함하여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함
규제대안2	대안명	해당 없음
	내용	해당 없음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규제대안1	체육계 전반의 지도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시행 가능	재교육기관의 행정적 부담
규제대안2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스포츠윤리센터 (재교육 위탁기관)	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시행을 위해 교육대상에 운동경기부 명시 필요	반영
국민체육진흥공단 (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기관)	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가 다수 존재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필요	반영

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수강 의무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지도자 전반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제고를 통해 인권침해·비리를 예방하기 위함임
- 법령에 따른 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 부과에 운동경기부가 누락되어 입법 미비 발생 및 다른 단체에서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가능

- 또한, 현행법령 상 재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의 약 4%로 적지 않은 수치며 인권침해 및 비리도 높게 나타남
- 「2023년 스포츠 인권·비리 실태조사」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침해·비리 경험 및 목격률이 가장 높음(14.3%)

### 3. 기대 효과

-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을 통하여, 체육계 지도자 전반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제고

## II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교육 의무 수강 대상자는 **체육단체, 학교** 등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종사하고 있는 모든 체육지도자가 대상으로 예외 규정은 없음
- 법률에서 위임한 재교육 대상자 범위에 운동경기부가 누락되어 이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하여 입법적 미비를 없애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
- 또한 재교육 위탁기관이 대상자를 확보 수단으로 경기인 등록시스템(대한체육회)을 이용하도록 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, 체육지도자 전반의 인권의식·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침해·비리 사건 예방 등 정책 목적의 편익이 커 규제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설정 여부	원칙허용· 예외금지
기술	경쟁	중기	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미설정	해당없음

### ○ 영향평가

#### 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없음

#### 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#### - 중기영향평가

해당없음

### ○ 기타 고려사항

####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없음

#### - 국제 기준 정합성

해당없음

#### - 일몰설정 여부

- (미설정)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의무 수강 대상 지정은 체육지도자 재교육사업의 기본요소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자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

#### 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
해당없음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

## ○ 해외사례

해당사항 없음

## ○ 타법사례

-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중 운동경기부의 대상 포함을 다수 규정하고 있음

·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(국민체육진흥법)

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(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) 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
2. 합숙소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3.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·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(국민체육진흥법)

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·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, 소속 이력, 수상 정보,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

·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국민체육진흥법)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**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(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체육회등의 장(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항에서 같다)은 소속된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.
-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,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운동경기부를 재교육 의무 수강 대상에 포함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0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4	2025	10	-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 1 : 확률 정보표시 일반원칙 및 매체별 표시방법 규정				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				

· 소상공인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
정부			
총 합계			
기업순비용		연간균등순비용	

### Ⅲ. 규제의 실효성

#### 1. 규제의 순응도

##### 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현재, 운동경기부를 제외한 대한(장애인)체육회 및 지방(장애인)체육회, 경기단체,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
-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일부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함으로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

##### 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##### 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재교육 위탁 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교육 콘텐츠 제작·대상자 취합·온라인 교육 제공·미이수자 취합 및 보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, 시행규칙 개정(안) 이전에도 대한(장애인)체육회 및 지방(장애인)체육회, 경기단체,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-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수는 '23년 12월 기준 1,086명이며, 전체 체육지도자 총 25,057명 대비 4%로 기존 업무량 대비 미미한 수준
- 또한, 교육 수강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·배포할 계획이며, 계도기간 부여 등을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

## 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체육지도자 재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콘텐츠 개발·재교육 수강을 위한 LMS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기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, 시행규칙 개정(안)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

## 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 1. 추진 경과

-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권고('20.6.23.)
-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문체부장관에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
-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('20.12.8. 일부개정, '21.6.9. 시행)
- 체육지도자 재교육 운영('22.1~'23.12)
- 재교육 위탁기관의 시행 문제점 및 개선 건의, 법률자문('24.4. 스포츠윤리센터)
-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 의무 수강 대상으로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포함 의견 수렴
- 운동경기부의 의무 수강 대상자 포함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

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운동경기부를 포함한 전 체육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운영을 통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

### 3. 종합결론

- 법 제11조의6 제4항이 위임한 재교육 의무 수강 대상자를 구체화한 것으로, 법령의 정책 목적인 전 체육계 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인권의식·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인권침해·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운동경기부 지도자를 재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

**별첨**

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**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**

분석기준년도	규제시행년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
2024	2025	10	-	백만원, 현재가치

규제대안1 : 확률 정보표시 일반원칙 및 매체별 표시방법 규정

영향집단		비용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		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		
기업순비용			연간균등순비용	

**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**

○ 운동경기부 지도자를 재교육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교육 위탁기관(스포츠윤리센터, '24.5월 기준)의 대상자 수집 및 교육제공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재교육 기 시행 및 체육인 등록 시스템 등을 이용한 대상자 취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,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
○ 이에 반해 현재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(동호인 제외) 총 25,057명의 약 4%에 해당하며 재교육에 대한 법령의 개정이유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, 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인권침해·비리 사건 예방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<규제대안 1 : 운동경기부를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에 포함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직접비용

(정성)영향집단명	운동경기부에서 체육 지도 업무를 하는 체육지도자																							
활동제목	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 수강																							
비용항목	기타																							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설명	<p>○ (일반 현황) 2023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는 총 1,086명으로 전체 체육지도자(동호인 제외) 총 25,057명의 약 4%에 해당</p> <p>- 「2023년 스포츠 비리인권 실태조사」 결과 프로 및 실업팀 선수의 인권침해·비리 경험 및 목격율은 14.3%로 타 체육단체 선수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표&gt; 2023년 스포츠 인권·비리 실태조사 결과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</th> <th colspan="5">인권침해·비리를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음</th> </tr> <tr> <th>전체</th> <th>초등학생</th> <th>중고등학생</th> <th>대학생</th> <th>프로실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응답비율</td> <td>7.8%</td> <td>5.9%</td> <td>5.2%</td> <td>12.5%</td> <td>14.3%</td> </tr> <tr> <td>응답자 수</td> <td>2,352명</td> <td>401명</td> <td>746명</td> <td>357명</td> <td>626명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(한계) 다만, 직장운동경기부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 수강하도록 하고,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단체별 인원·인건비 등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직접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데 한계를 가짐</p>		인권침해·비리를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음					전체	초등학생	중고등학생	대학생	프로실업	응답비율	7.8%	5.9%	5.2%	12.5%	14.3%	응답자 수	2,352명	401명	746명	357명	626명
	인권침해·비리를 경험 또는 목격한 적 있음																							
	전체	초등학생	중고등학생	대학생	프로실업																			
응답비율	7.8%	5.9%	5.2%	12.5%	14.3%																			
응답자 수	2,352명	401명	746명	357명	626명																			

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:

□ 편익

(정성)영향집단 명	전 체육인
활동제목	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 수강
편익항목	기타
일시적/반복적	반복적
근거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 수강 시행에 따라,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·인권의식 제고로 인권침해·비리가 선제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</li> </ul>